

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1. 회 의 년 월 일 : 2021년 01월 28일(수) 14:00
2. 회의소집통보일 : 2020년 01월 22일(금)
3. 회 의 장 소 : 전북희망캠퍼스 예문관 대회의실
4. 회 의 안 건 : 1) 본교 학칙 개정 재심의(건)
2) 2020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 자문(건)
3) 2021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(안) 자문(건)
5. 위 원 정 족 수 : 11명
6. 참 석 의 원 : 문병량 의장, 고병희, 최낙관, 서인순, 문혜진, 장성식 의원
7. 결 석 의 원 : 고재우, 전찬열, 김건호, 이철규, 이종태 의원
8. 회 의 내 용 :
문병량 의장이 출석을 점명하니 참석의원 6명으로 의원 정수의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어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 안건을 상정하다.

문병량 의장 : 바쁘신 업무에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금일 회의는 기 통보해 드린바와 같이 본교 학칙 개정 재심의(건) 및 2020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과 2021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(안)을 자문 하고자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.

먼저, 의원님들의 회의자료 검토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(회의자료 배부 및 참석의원 회의자료 검토)

문병량 의장 : 의원님들께서 회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보고 첫 번째 안건인 본교 학칙 개정 재심의(건)을 상정하겠습니다.

먼저, 간사이신 기획조정팀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노은정 간사 : 저번 회의에 「예원예술대학교 학칙 제18조 휴학의 제⑥항 장애학생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」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부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하셔서 교학지원처와 다시 한번 타대학교 규정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장애학생이라는 문구는 일부 학교의 학칙에도 명시되

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첨부 자료에 있는 타대학교 학칙의 사례들을 보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.

문병량 의장 : 네, 설명 잘 들었습니다. 노은정 간사님 의견대로 타 대학교 학교 규정 첨부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,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.

최낙관 의원 : 저도 금일 회의를 들어오기 전 이 부분에 대해 타 대학교 사례들을 검토하였는데 별도로 ⑥항을 추가하여 장애학생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 보다는 제18조 휴학 제③항 휴학은 3회 이내에서 통상 3년 계속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질병휴학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장애학생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학칙을 개정하였으면 합니다.

서인순 의원 : 저도 최낙관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. 장애학생의 별도 항을 추가하는 것보다 제18조 휴학의 제③항에 이 문구를 추가하여 학칙을 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특정 대상을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
문병량 의장 :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?

참 석 위 원 : 네, 동의합니다.(참석위원 전원)

문병량 의장 : 두분의 의원님의 의견 감사드리며 그럼 첫 번째 안건인 본교 학칙 개정 재심의 건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제18조 휴학의 ⑥항 장애학생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 추가(건)은 제⑥항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고 제③항 휴학은 3회 이내에서 통상 3년 계속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질병휴학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장애학생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심의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문병량 의장 : 그럼 두 번째 안건인 2020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 자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.
간사이신 기획조정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노은정 간사 : (2020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에 의거 설명함)

문병량 의장 : 네. 설명 잘 들었습니다. 2020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과 관련하여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고병희 의원 : 본 예산대비 전입 및 기부금 수입이 줄어들었는데, 추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더 노력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또한 예산서를 보면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이 본 예산대비 감소하였는데, 앞으로 저희가 재학생충원을 지표 향상 노력 및 평생교육원 활성화 및 산학협력단에서도 외부 사업 유치 등 더 노력을 하였으면 합니다.

최낙관 의원 : 저도 고병희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, 회의 전에 추가경정 예산서 개요 부분도 작성하여 그거에 대한 자료도 다음 회의 때에는 준비 부탁드립니다.

서인순 의원 : 최낙관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. 또한 좀 더 예산서의 관항목 사항을 준수하여 지급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또한 예산 부서와도 조정 및 협의 하에 절차를 준수하여 지급이 되었으면 합니다. 추후 예산 편성 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정확한 예산 부서의 통제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합니다. 2020학년도 추경 예산서에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정부채 일부 미상환 및 등록금 수입 감소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. 원안대로 자문하였으면 합니다.

문병량 의장 :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동의하십니까?

참 석 위 원 : 네, 동의합니다.(참석위원 전원)

문병량 의장 :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참 석 위 원 : 없습니다.

문병량 의장 : 그럼, 두 번째 안건인 2020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 자문의 건은 원안대로 자문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이어서 세 번째 안건이 2021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(안) 자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. 간사이신 기획조정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, 예산서는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.

노은정 간사 : (2021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에 의거 설명함)

문병량 의장 : 설명 잘 들었습니다. 올 해 예산편성에 있어 기획조정처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을거라 생각합니다. 저희가 저번 회의 때도 1차 예산(안)을 검토하여 자문하였고, 금일 회의에도 2021학년도 교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.

고병희 의원 : 먼저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각 부서와 함께 여러차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을거라고 생각합니다. 현재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보다 중요한 건 예산의 편성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,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현재 기타 고정부채의 상환의 미지급 내역들이 많은데,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기획조정처 예산팀에서는 부채상환계획서에 의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, 과거 내역부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미지급 급여 및 장기 미지급금 등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, 재정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 및 재학생 관리 및 더불어 재입학, 편입학 학생 모집에서도 수입 예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서인순 의원 : 저도 고병희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학교 재정 운영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면, 예산 편성 후 그 예산을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합니다.

문병량 의장 : 두 분 의원님의 의견 감사드리며 오늘 자문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?

고병희 의원 : 예산서를 보다보니 직원 수당부분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

문병량 의장 :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직원각종수당 항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. 재무팀과 예산팀이 물론 회계 업무의 어려움을 알겠지만, 팀장 수당과 특정 직 수당을 주는 것은 이걸 교직원내에서 사기저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만약 수당을 주려면 형평성에 맞게 모두에게 주든지,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급여성으로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

최낙관 의원 :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이번에 자세히 예산(안)을 검토하였는데, 팀장 수당과 특정직 수당 중 조정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
이 부분에 대해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검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문병량 의장 :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 나온 의견 사항에 대해 행정지원처와 기획조정처에게도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.

그리고 현재 예산(안)의 보수 부분에서 전임교원의 연봉이 몇 년동안 동결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한 교원으로 인해 절감된 금액만큼 저희 교원들에게 보수 부분에 대해 인상을 해줘야 하는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.

고병희 의원 : 네, 저도 의장님 의견에 동의하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. 2월 1일부로 예산팀도 신설이 되었는데, 추후 각 부서에서도 필요한 소요액을 정확히 계상하도록 하여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학력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 모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더 노력하여 외부사업 유치 및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, 재학생 관리 등 수입 증대를 위해 더 노력하였으면 합니다.

최낙관 의원 : 저도 고병희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, 3주기 대학진단평가 대비 재학생 충원을 지표관리를 위해서도 장학금, 학생 복지 등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합니다.

고병희 의원 : 오늘 회의에 나온 사항들을 간사님께서 잘 정리해서 자문사항으로 의견 전달을 부탁드립니다, 2021년 교비회계 예산편성최종 심의 전 교원급여, 직원각종수당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.

서인순 의원 : 저도 동의합니다.

문병량 의장 :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?

참 석 위 원 : 네, 동의합니다.(참석위원 전원)

문병량 의장 :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, 그럼 세 번째 안건인 2021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(안) 자문의 건은 교원급여 및 직원각종수당 부분에 대해 최종 예산(안) 심의 전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. 긴 시간동안 좋은 의견을 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금일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바쁘신 중에 금일 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,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

9. 의결 및 자문내용

안건 1) 본교 학칙 개정 재심의 건

1.1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제18조(휴학) ⑥항(장애학생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) 추가(건)

- 제18조(휴학) ③ 휴학은 3회 이내에서 통상 3년 계속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질병휴학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장애 학생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로 심의 의결 함
- ☞ 제18조(휴학)의 ③항의 뒤에 문구 추가로 심의 의결 함

안건 2) 2020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(안) 자문의 건 : 원안대로 자문 의결 함 <자문내용>

- 예산 부서와도 조정 및 협의하에 절차를 준수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함

안건 3) 2021학년도 교비회계 자금예산(안) 자문의 건 : 교원급여 및 직원각종수당 부분 예산(안) 심의 전 검토 요청

<자문내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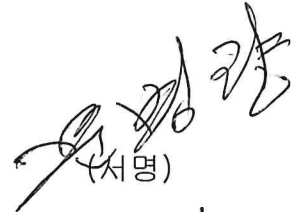
- 기타고정부채의상환 시 부채상환계획서 수립을 통해 집행하도록 함
- 직원각종수당 특정직 수당부분(재무팀, 예산팀 등) 검토 필요
- 교원급여 부분에 대해 퇴직한 교원으로 인해 절감된 보수액에 대해 현 교원들 급여부분 인상하여 적용 검토
- 재학생 이탈 방지, 재입학 및 편입학생 모집을 통한 수입 증대 노력
- 부서별로 필요한 소요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함
- 학교 재정이 효율성 ·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권고

2021년 01월 28일

작성자 : 기획조정팀장 노 은 정



대학평의원회 의장 문 병 량



의원 고 병 희



의원 이 종 태

(서명)

의원 서 인 순



의원 최 낙 관



의원 장 성 식



의원 문 혜 진

